

2014.11.20

## '우수기업 세관장확인 생략에 따른 수입신고 방법 안내'

관세청이 성실기업에 대해서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'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'을 마련하였습니다. 통관규제를 이원화(Two-track 체계)하여 **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\***에 대하여는 **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하고**, 요관 확인기관이 통관 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합니다.

\*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등

### [확인생략 대상기업] AEO업체, 보세공장, 자율확인 중소기업

- ▶ AEO 업체 :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-기업별 사후관리
- ▶ 보세공장 수입물품 : 국내 제조기업 관리에 준하여 관리
- ▶ 자율확인 중소기업 신청 업체 : 요건확인기관과 협의後 지정

| 구 분        | AEO 등 우량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율확인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대상         | 모든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정방법       | (포괄) 지정기준 사전협의<br>- 기준 해당기업은 자동적용 | (개별) 희망 기업 지정 신청<br>- 세관/요건확인기관 협의 후 지정 |
| 세관장확인 면제대상 | 적용법령의 모든 품목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법령의 모든 품목<br>(단, 필요 시 HSK별 제한 가능)     |
| 지정기간       | 지정기준 유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| 1년 단위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출처 : 관세청

2014.11.20

**[법령별 차등운영 대상 기업]**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세관장확인생략 대상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전파법                | 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<br>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 |
|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       | 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<br>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 |
| 품질경영 및<br>공산품안전관리법 | ① AEO인증기업, ②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<br>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 |
|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    | ③ 별도 요건확인기관이 요청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방위사업법              | ① 보세공장 제조품 수입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[요건구비 및 세관장확인 프로세스 변경안]**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후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전파법                    | 최초수입 | 전자파적합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없음(좌동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건별 | 전자파적합인증확인서 신청/제출                       | 모두 생략               |
| 전기용품<br>안전관리법          | 최초수입 |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<br>합성확인             | 변경없음(좌동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건별 | 안전인증확인서 · 안전확인신고서 ·<br>공급자적합성확인서 신청/제출 | 모두생략                |
| 품질경영 및<br>공산품<br>안전관리법 | 최초수입 |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없음(좌동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건별 | 공산품동일모델확인증 신청/제출                       | 모두 생략               |
| 유해화학물<br>질관리법          | 최초수입 | 유독물수입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없음(좌동)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건별 | 유독물수입신고확인증 신청/제출                       | 모두 생략               |
| 방위사업법                  | 수입건별 | 수입허가서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허가서 신청필요<br>세관제출 생략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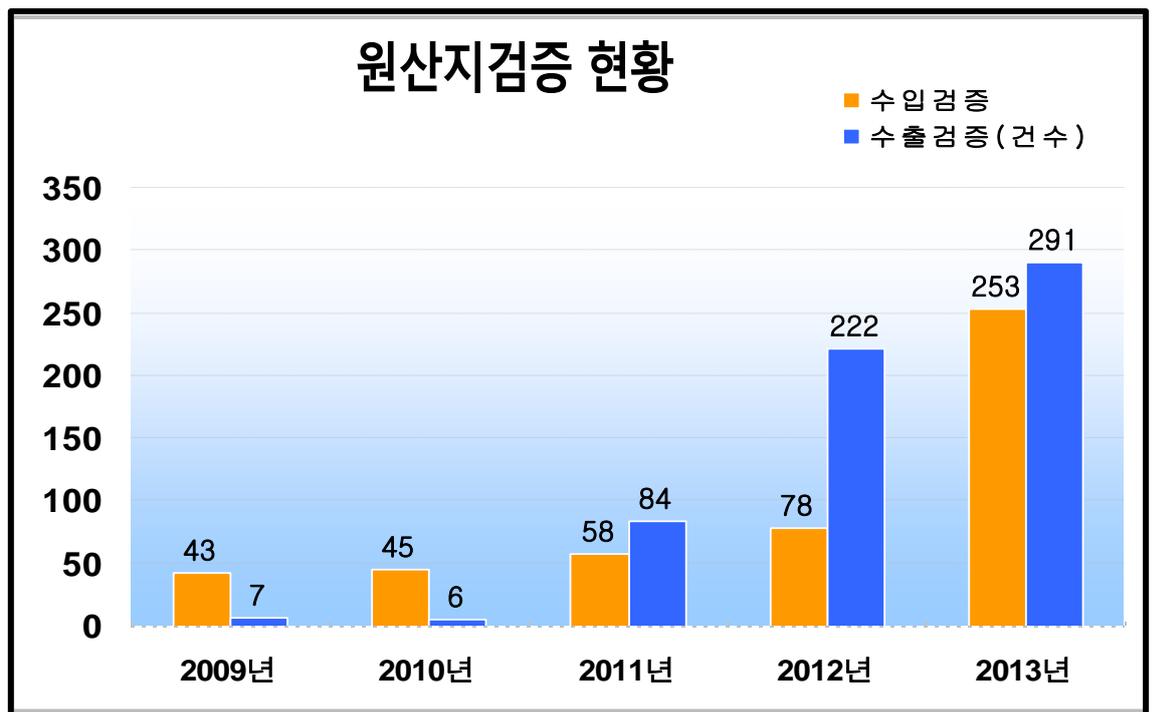
\* 보세공장 단위로 제조허가를 받은 후 완제품 마다 수입허가 필요

2014.11.20

## FTA 원산지검증, '증명자료 보관'에 성패 달려

- FTA 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FTA를 통한 교역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최근 **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증가**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- 원산지검증이란 수입자가 신고한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**입니다.

즉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.



# 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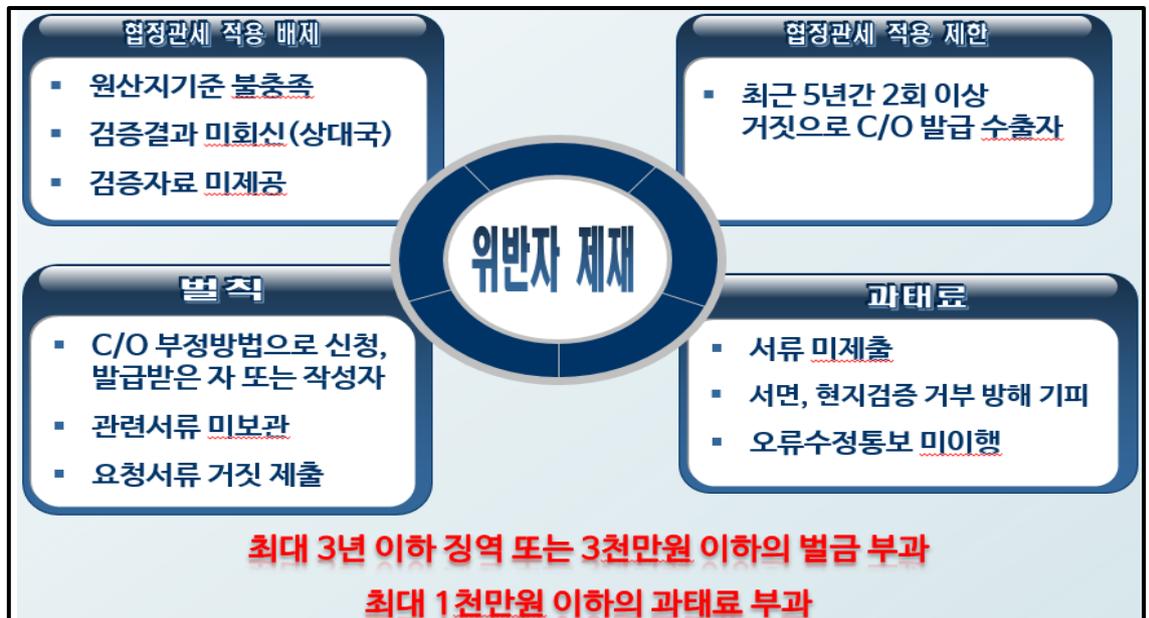
## 원산지검증방식

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·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| 협정            | 간접검증   | 직접검증                     | 회신기한    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한·칠레          | -  |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, 방문조사        | -        |
| 한·싱가포르 (순차적용) | ① 수출국 세관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          | ② 방문조사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|
| 한·EFTA        |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10개월     |
| 한·아세안 (순차적용)  |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방문조사                   | 2개월      |
| 한·인도 (순차적용)   | ①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          | 3개월      |
| 한·EU          |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10개월     |
| 한·페루          |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,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|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| 150일     |
| 한·미           | 간접검증 방식 적용(섬유제품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요청, 서면질의, 방문조사         | 섬유 : 6개월 |
| 한·터키          |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10개월     |

## 제재조치

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·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

# 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## 서류보관의무

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 이후 **수출자, 생산자 및 수입자**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**5년동안 보관**하고 세관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,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세관관세법인은 KOTRA FTA 업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관 관세법인으로, 한-EU·한-미 FTA 원산지 검증에 관한 다수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
평소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만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관세법인 FTA팀으로 연락바랍니다.